

태국 통관환경 보고

2012. 4. 25

정승환 관세관

1. 태국(Kingdom of Thailand) 개관

- 인구 : 6,400만명 (2010년)
 - 증가율 0.7%, 평균수명: 남70세, 여75세, 남녀성비=98/100
- 면적 : 51.4 평방킬로미터 (한반도의 2.3배)
- 수도 : Bangkok (인구 995만명, 면적 1,569 킬로미터)
- 주요 경제지표 (2011년)
 - GDP 3,456억불, 1인당 국민소득 5,112불
 - 무역액 4,573억불 (수출 2,288억불, 수입 2,285억불)
 - 외환보유고 1,751억불, 총 외채 956억불
 - 경제성장율 0.1%, 물가상승율 3.8%, 실업률 0.7%
- 종교 : 불교 94.6%, 이슬람교 4.5%, 기타 0.7%

2. 태국 경제

- **수출액이 GDP의 70% 규모인 수출지향형 경제구조**
 - 70년 이후 산업화 및 외자유치로 90년대 중반까지 고성장
 - 97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으로 5~7% 성장
 - 08년 Global 금융위기, 11년 홍수사태로 성장 주춤
- **1차 산업 비중이 축소되고, 2, 3차 산업이 증가하는 산업구조**
 - 농림수산업 : 50년 47% → 06년 9.2%
 - 제조업 : 80년 21.5% → 06년 38.7%
 - 서비스업 : 01년 30.7% → 09년 49.9%
- **무역구조**
 - 주요 수출품(2010) : 공산품 77.6%, 농림수산물 18.8%
 - 주요 수입품(2010) : 자본재·원재료·중간재 69%, 소비재 9.5%
 - 주요 교역국 : 중국, 일본, 미국, 말레이시아
 - 한-태간 무역액(2011) : 139억불

3. 세관통관 주요 환경

가. 세관절차 자동화 (e-Customs)

- **98년 EDI 최초 도입, 2000년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**
 - 2007년 e-Customs 구축 : e-Import, e-Export, e-Manifest, e-Payment, e-Warehouse로 구성
- **수입신고 및 세관통관 절차 (e-Import)**
 - e-Customs을 통해 입항보고 및 적하목록 제출
 - 수입물품 세관신고서 작성 및 e-Customs를 통한 전송
 - 전송 자료의 유효성 확인, 검사대상(Green Line, Red Line) 선정 및 관련 제출서류 검증 → 수입신고/세금납부 번호 부여
 - * 검사대상 제출서류 : 수입신고서, B/L, Invoice, Packing list, Permit(License, Certificate등), CO, 기타 서류
 - 수입제세 납부(e-Payment 또는 Customs Department)
 - 물품검사(Red Line) 및 반출
 - * 반출시 필요서류 : 수입신고수리필증, 세금납부영수증

가. 세관절차 자동화 (e-Customs)..cont'd

○ 수출신고 및 세관통관 절차 (e-Export)

- 수출물품 세관신고서 작성 및 e-Customs를 통한 전송
- 전송자료의 유효성 확인, 검사대상(Green Line,Red Line) 선정
→ 수출신고번호 부여 및 e-Payment와 연계된 세금납부 번호 부여 및 통보
- 수출관세 납부(e-Payment 또는 Customs Department)
-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 및 화물통제 보고
- 물품검사(Red Line) 및 반출·선적
 - * 검사대상 제출서류 : 수출신고서, Invoice, Permit(License, Certificate등), CO, 기타 서류
- e-Customs 을 통해 적하목록 제출 → 수출신고수리 완료

나. 관세율 체계(Tariff Nomenclature)

○ 태국의 관세율 분류체계

- 국제적 조화를 위해 88년 HS 협약 수용... 관세율령에 반영
- 매 5년마다 동 분류체계 수정작업 → 현재는 HS 2012 사용
- ASEAN 회원국간 분류체계(8단위) 조화를 위한 AHTN 수용

○ 태국의 관세율령 구조

- 관세율표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부여
 - * 동 해석의 근거는 관세율령 Part 1의 품목분류 해석을 위한 일반 규칙 및 HS 협약의 주석(해설서) 임
- 수입관세율, 수출관세율, 협정관세율(재무장관 고시로 규정)
- 관세의 경감, 면제, 추가 권한(재무장관 고시로 규정)

나. 관세율 체계(Tariff Nomenclature)... cont'd

- **수입자 vs. 세관간 관세율(품목분류) 분쟁의 주 원인**
 - 수입자(또는 수출자)는 수출자가 한국세관에 신고시 사용한 HS code를 태국세관이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인식
 - 태국 세관담당자는 자신 또는 태국 세관이 판단하는 HS code 로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

- **분쟁 해결절차**
 - 1) 수입자와 일선세관 담당공무원간 협의
 - 2) 의견 불일치시 관세청에 품목분류 결정을 요청할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요구
 - 3) 관세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
Appeal Committee on Duty Assessment 에 이의제기 신청
 - 4) Appeal Committee 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장, 관련 법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
 - Committee의 결정에 불복시 30일 이내 법원에 제소

라. 관세가격 결정 (Customs Valuation)

○ 2000년부터 GATT 관세가격 평가체제 적용

- 실제거래가격 → 동일물품 거래가격 → 유사물품 거래가격
→ Deductive Value → Computed Value → Fall Back Value 순 적용
 - CIF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판매조건을 이루는 비용과 서비스를 포함한 조정가격 적용
- ※ 수입자의 신고가격이 의심스럽거나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관세가격을 적용

○ 수입자 vs. 세관간 관세가격결정 분쟁 해결절차

- 1) 수입자와 일선세관 담당공무원 협의
- 2) 불복시 수입제세 담보납부 및 입항지 세관과 협의
- 3) 불복시 Appeal Committee에 이의제기 신청
 - Assessment Notice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
- 4) Appeal Committee 가 조사·결정 및 서면 통지
- 5) 불복시 30일 이내 법원에 제소

다. 분쟁의 사전예방 제도(Advance Ruling)

○ Advance Tariff Ruling

- 수입예정일 30일 이전에 Customs Tariff Bureau(관세율국)에 신청
- 관세율국은 신청일로부터 30 근무일내 결정·통보 (제출서류 불충분시 추가서류 제출일로부터 30 근무일 다시 시작됨)
- 동 결정에 불복시 재검토 요청 → 30 근무일내 최종 결정
- ※ 동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세관에서 1년간 유효함

○ Advance Valuation Ruling

- 수입전에 Customs Standard Procedures and Valuation Bureau(관세표준평가국)에 신청
- ※ 구비서류 : 신청서, 신청인의 이름·주소, 제품 상세명세서, 입증서류
- 관세표준평가국은 신청일로부터 30 근무일내 결정·통보 (제출서류 불충분시 추가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근무일 다시 시작됨)
- ※ 동 결정은 실제 수입물품과 신청서상 물품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됨

마. 관세특혜제도 (Customs Incentive Schemes)

○ Bonded Warehouses

- 8개 유형 : 제조, 선박수리건조, 일반, 전시용 일반, 유류보관용 일반, 면세점, 면세물품보관, 자유지역용 보세창고지역

○ Free Zone : 제조·가공업체에 관세 및 내국세 등 혜택 부여

- 수입제세 면제 : 기계·장비 및 부품, 외국물품 등
- 부가세, 주세, 소비세 면제 : Free Zone내 생산 또는 반입 물품
- Free Zone내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등

○ 관세환급

-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(관세법 Section 19 bis)
 - 수입물품이 수출품의 제조, 혼합, 조립 또는 포장에 사용되고,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수출된 경우
 - 수출일로부터 6월 이내 환급신청해야 함
- ※ 이외에도 추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세관에 확인 필요

바. 수(출)입 금지 및 인허가 대상

금지물품

- 풍속저해물품(음란물)
- 마약류 및 위조 지폐/증권
- 지재권 침해 물품
- 태국 국기가 새겨진(포함된) 물품
- 위조 태국 왕실 및 공공기관의 Seals
- 장미목(티크) 등

인허가 대상(개별법 또는 상무장관이 고시) 예시

- 유해/화학 물질(Sample 포함) :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
- 식품(건강보조식품),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등 : FDA
- 동·식물, 외국환 및 바트화 휴대반출입, 중고자동차, 무기, 폭발물

4. 수입제세 납부액 계산법

가정 사례

- CIF 200 USD,
- Fee 50 USD,
- Excise tax 30%
- Special Duty (Surcharge) : 10 USD
- Tariff 60%,
- Interior tax 10%,
- VAT 7%

1. 계산 순서 : Excise tax → Interior tax → VAT

2. 유의 항목 : Fee 감안, Excise 세율 계산법

$$\begin{aligned} - \text{Excise tax} &= (\text{CIF} + \text{Surcharge} + \text{Fee}) * (\text{Rate of Excise tax}) \\ &= (200+130+50)* [0.3/\{1-(1.1*0.3)\}] = 380*0.4477612 = 170 \end{aligned}$$

5. 관세법 위반 처벌 및 단속 포상

A. 위반시 형량 (양벌 병과 가능)

- 밀수/부정무역/탈세 : 세금포함 물품가격의 4배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
- 허위신고 : 50만 바트 이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

B. 단속 포상금(Reward)

- 밀수 등 : 민간인- 매각대금의 30%, 단속공무원 - 25% (추징세액 10%)
- 허위신고 : 민간인 - 벌금의 30%, 단속공무원 - 25%

C. 유의사항

- Reward가 크므로 내부직원에게 대한 관리 중요
- 위반사항 적발시 세관과 적절한 타협 검토 필요

6. 주요 민원유형

A. 정보조사 요청

- 세율 문의 : 관세율(AK FTA 양허세율, 상호대응세율 품목여부), 소비세율(Excise Tax), 부가세(VAT)
- 원산지증명서(CO) : 발급기관·절차, Hs code 등 기재사항
- 수출입 금지 및 제한(인허가대상) 여부
- 특정물품의 수입통관 진행상황, 수입파트너 정보 등

B. 애로 또는 분쟁해결 지원 요청

- HS Code 번호 상이로 인한 관세율 갈등
- CO 기재오류/관련서류상 정보와 상이, 제출기한 초과 등으로 인해 애로

C. 관세법/소비세법 위반행위에 처벌경감 또는 벌금납부지연 협조 요청

- 세관 사후심사 또는 조사 관련
- 휴대담배 등 여행자 휴대품 과다반입 미신고 또는 가격 허위신고
- 외환(바트화 포함) 초과 반출

7. Customs Clinic (고객상담 센터)

A. Customs Clinic 제공 서비스

- 1) 일반 문의사항 답변 : 즉답 또는 3일 이내
- 2) 보다 기술적인 사항 문의에 답변 :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5일 이내
- 3) 세율(품목분류), 관세가격계산법 문의에 답변 : 60일 이내

B. 접근 방법

- 전화 : 66-2-667-7880~4, e-mail : customs_clinic@customs.go.th

8. 태국 Business 관행

A. 태국인 특징

- 자부심이 매우 강함
- 가족의 가치를 높게 평가, 연장자 존중, 상대방 체면 중시

B. Business 관행 및 유의사항

- 근무시간 08:00~17:00, 교통체증으로 약속시간에 늦는 것을 용인
- 서열과 연장자 존중이 매우 중요 → 사회적 지위와 기업의 위계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
-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업과 협상에서 중요 → 사교활동에 초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응하는 것이 좋음
- 공식 모임/회의에 앞서 비공식적인 대화를 소홀히 하면 안됨
- 의사결정에 오래 시간이 소요 → 조바심은 나약함의 신호로 인식
- 감정을 보이고 화를 내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
- 왕실을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농담·비판은 금물